

## 부천시가스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1. 2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99. 12. 1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가. 제안이유

○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조례 제1134호

91. 4. 6) 운용되어 왔으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99. 6. 30 대통령령 제16453호)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개정(99. 6. 30 대통령령 제16450호)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99. 6. 30 대통령령 제16459호)으로

가스관련법 3법 시행령상에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본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보다 하위법규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

|       |                        |
|-------|------------------------|
| 의안번호  | 제247호                  |
| 의결년월일 | 1999. 12. 24<br>(제75회) |

제출년월일 : 1999. 11.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폐지)이유

-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조례 제1134호 91. 4. 6) 운용되어 왔으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개정(99. 6. 30 대통령령 제16453호)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개정(99. 6. 30 대통령령 제16450호)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99. 6. 30 대통령령 제16459호)으로
  - 가스관련 3법 시행령상에 위반행위별료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조례 폐지"

본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보다 하위법규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1991. 4. 6 조례 제1134호 ]

개정 1998. 4. 1 조례 제1572호

1999. 4. 30 조례 제16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균형과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

제3조(처분) ①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처분청 또는 검사기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그 시정을 태만히 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보다 가중 부과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보다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합당한 부과기준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③시장은 처분을 행하였을 때에는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을 피처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진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시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6조(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1991. 4. 6 조례 제11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4. 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30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 위 반 내 용  | 관 련 법 규                                | 처 분 내 용        |                           |                  | 부과<br>권자 |
|--|--|----------------|---------------------------|------------------|----------|
|  |  | 1회             | 2회                        | 3회               |          |
| 1. 안전관리규정  |  |                |                           |                  |          |
| 가. 사업개시 도는 사용신고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 고법 제11조제1항<br>액법 제10조제1항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시장       |
| 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 고법 제11조제4항<br>액법 제10조제4항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 다. 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치 않고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았을 때          | 고법 제11조제5항<br>액법 제10조제5항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 라. 제조공정 및 자체검사 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 고법 제11조제3항<br>액법 제10조제3항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 2. 안전관리자   |  |                |                           |                  |          |
| ○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에도 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 고법 제15조제3항<br>액법 제14조제3항<br>도법 제29조제3항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시장       |
| 3. 보험가입  |  |                |                           |                  |          |
| ○ 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고법 제25조제1항<br>액법 제33조제1항               | 60일 미만<br>30만원 | 60일 이상<br>180일 미만<br>60만원 | 180일 이상<br>100만원 | 시장       |
| 4. 자체검사  |  |                |                           |                  |          |
| ○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용기 등에 대한 자체검사 미 실시 또는 자체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 고법 제12조제1,2항<br>액법 제11조제1,2항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시장       |

| 위 반 내 용   | 관 련 법 규   | 처 분 내 용      |              |               | 부과<br>권자 |
|---|---|--------------|--------------|---------------|----------|
|   |   | 1회           | 2회           | 3회            |          |
| <p>5. 시공의 자체검사</p> <p>○ 시공자가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 관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p>  | <p>액법 제16조제1항<br/>고법 제13조</p>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시장       |
| <p>6. 공급자의 의무 등</p> <p>가. 가스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가스를 계속하여 공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p> <p>나. 가스수요자가 그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 <p>고법 제10조제3항<br/>액법 제9조제3항</p> <p>고법 제10조제4항<br/>액법 제9조제4항</p>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시장       |
| <p>7. 시설, 용기의 안전유지</p> <p>가. 가스용기를 산업자원부령에 의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때</p> <p>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령에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때</p>  | <p>고법 제13조제4항<br/>액법 제12조제4항</p> <p>고법 제13조제3항<br/>액법 제12조제3항</p> | 10만원<br>30만원 | 30만원<br>60만원 | 50만원<br>100만원 | 시장       |
| <p>8. 사용신고 등</p> <p>가. 가스사용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p> <p>나. 가스사용신고 대상자는 사용할 때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p> | <p>고법 제20조제3항<br/>액법 제29조제3항</p> <p>고법 제20조제4항<br/>액법 제29조제4항</p>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시장       |

| 위 반 내 용   | 관 련 법 규                                | 처 분 내 용      |              |               | 부과<br>권자 |
|---|--|--------------|--------------|---------------|----------|
|   |  | 1회           | 2회           | 3회            |          |
| 9. 허가관청 등의 조치<br>○ 위해 예방 명령에 위반한 때  | 고법 제24조<br>액법 제32조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시장       |
| 10. 보고, 검사 등<br>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등에 위반한 때<br>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 고법 제26조제1항<br>액법 제35조제1항<br>고법 제41조제2항 | 10만원<br>10만원 | 30만원<br>30만원 | 50만원<br>50만원  | 시장       |
| 11. 가스시설의 시공관리<br>○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 그 시설을 시공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 관리하지 않았을 때 | 액법 제15조제1항<br>도법 제12조제1항               | 10만원<br>30만원 | 30만원<br>60만원 | 50만원<br>100만원 | 시장       |
| 12. 가스 공급 의무<br>○ 가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였을 때   | 액법 제25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시장       |
| 13. 공급시설의 임시 합격<br>○ 임시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으로 된 시설은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할 때           | 액법 제19조제2항<br>도법 제16조제2항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시장       |

※ 약어 - 고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도법 : 도시가스사업법  
- 액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